



		대법원 2026. 1. 15. 선고 2022후10418 권리법위확인(디) (나) 상고기각
제목	확인대상 디자인이 등록디자인의 디자인권 권리법위에 속하는지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지 않고 있는 디자인을 대상으로 한 적극적 권리법위 확인심판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각하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확인대상 디자인과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고 있는 디자인의 동일성에 관한 판단기준	
판결이유	디자인권자가 확인대상 디자인이 디자인권의 권리법위에 속한다는 내용의 적극적 권리법위 확인심판을 청구한 경우, 심판청구인이 특정한 확인대상 디자인과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고 있는 디자인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면, 확인대상 디자인이 디자인권의 권리법위에 속한다는 심결이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심결은 심판청구인이 특정한 확인대상 디자인에 대하여만 효력을 미칠 뿐 실제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고 있는 디자인에 대하여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 이와 같이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지 않고 있는 디자인을 대상으로 한 적극적 권리법위 확인심판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대법원 1996. 9. 20. 선고 96후665 판결 등 참조). 확인대상 디자인과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고 있는 디자인의 동일성은, 피심판청구인이 확인대상 디자인을 실시하고 있는지 여부라는 사실 확정에 관한 것이므로, 이들 디자인이 사실적 관점에서 같다고 보이지 않는다면 그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다.	

## (1) 본 판례의 의의 및 취지

- 적극적 권리법위 확인심판에서 요구되는 '확인의 이익'의 의미와 판단기준을 명확히 한 판례
- 피심판청구인이 실제로 실시하지 않는 디자인을 대상으로 한 적극적 권리법위 확인심판은, 설령 권리법위 속부에 관한 심결이 확정되더라도 실제 분쟁 해결에 아무런 효력이 없으므로 부적법함을 분명히 함
- 확인대상 디자인과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고 있는 디자인의 동일성 판단은 법률문제가 아니라 사실확정의 문제임을 명확히 함

## (2) 사안개요

- 당사자
  - 원고(피상고인): 주식회사 ○○○
  - 피고들(상고인): 주식회사 △△△ 외 1인
- 사건의 경과
  - 피고들은 특정한 확인대상 디자인을 특정하여, 해당 디자인이 자신들의 등록디자인의 디자인권 권리법 위에 속한다고 주장하며 적극적 권리법위 확인심판을 청구함
  - 특허법원은 심결 당시 원고가 실제로 실시하고 있는 디자인과 확인대상 디자인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함
  - 피고들이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함
- 쟁점
  -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지 않는 디자인을 대상으로 한 적극적 권리법위 확인심판이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한지 여부
  - 확인대상 디자인과 피심판청구인이 심결 당시 실시하고 있는 디자인 사이의 동일성 판단 기준

## (3) 법리

### ① 쟁점이 된 법적 쟁점

- 적극적 권리법위 확인심판에서 확인의 이익 인정 요건
- 확인대상 디자인과 피심판청구인이 실시 중인 디자인 사이의 동일성 판단 방법



### ② 쟁점과 관련된 사실관계

- 피고들은 특정한 확인대상 디자인을 특정하여 적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함
- 그러나 심결 당시 원고가 실제로 실시하고 있는 디자인은,  
확인대상 디자인과 **심미감상 동일하다고 볼 수 없음**
- 확인대상 디자인과 실시 디자인은 **사실적 관점에서 동일성이 부정됨**

### ③ 적용된 판단기준(법리 기준)

#### (가) 적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의 확인의 이익

- 디자인권자가 적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한 경우,
    - 특정한 확인대상 디자인과
    - 피심판청구인이 **심결 당시 실제로 실시하고 있는 디자인**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확인의 이익이 있음
  -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 확인대상 디자인이 디자인권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심결이 확정되더라도
    - 그 효력은 **확인대상 디자인에 한정**
    - 실제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고 있는 디자인에는 **아무런 효력이 없음**
  - 따라서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지 않는 디자인을 대상으로 한 적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 청구는
    -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 각하되어야 함
- (대법원 1996. 9. 20. 선고 96후665 판결 등 참조)

#### (나) 동일성 판단 기준

- 확인대상 디자인과 실시 디자인의 동일성은
  - 피심판청구인이 확인대상 디자인을 실시하고 있는지 여부라는
  - 사실 확정에 관한 문제**
- 두 디자인이 **사실적 관점에서 같다고 보이지 않는다면**
  - 그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음

#### (4) 특허법원(원심법원) 판단

- 확인대상 디자인과 심결 당시 원고가 실제로 실시하고 있는 디자인은
  - 심미감에 있어 서로 동일하다고 볼 수 없음**
- 따라서 확인대상 디자인은
  - 심결 당시 원고가 실제로 실시하고 있는 디자인이라고 할 수 없음
- 피고들의 이 사건 적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 청구는
  -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 각하되어야 함

#### (5) 대법원 판단

- 적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확인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설시함
- 확인대상 디자인과 실시 디자인의 동일성은 **사실적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함**을 명확히 함



- 원심이 확인대상 디자인이 심결 당시 원고가 실시하고 있는 디자인이 아니라고 본 판단은 정당함
- 원심 판단에
  - 확인의 이익에 관한 석명권 불행사
  - 심리미진, 논리와 경험의 법칙 위반, 자유심증주의 한계 일탈 등의 위법이 없음
- 나머지 상고이유는
  - 이 사건 적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 청구에 **확인의 이익이 인정됨을 전제로 한 원심의 가정적·부가적 판단에 관한 것임**
  - 확인의 이익이 부정되는 이상, 그 판단의 당부는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배척됨**

#### (6) 결론

- 대법원은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
- 이 사건 적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 (7) 한줄 키워드 요약

- 피심판청구인이 심결 당시 실제로 실시하지 않는 디자인을 대상으로 한 적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

#### (8) 추가 정리 포인트

- 적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는 '권리범위 속부' 판단 이전에 '확인의 이익'이 선결 요건
- 동일성 판단은 유사 여부 판단과 달리 사실확정 문제